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2. 10.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2. 10. 16

다. 의안번호 : 제 2002 - 38 호

라. 상정일자 : 제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2002.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안수상)

가. 제안이유

○ 제15호 태풍 『루사』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코자 함.

나. 주요골자 (감면대상 및 적용시기)

세목별	감 면 대 상	적용년도	비고
종합토지세	□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된 농경지 □ 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 부속토지	2002	
농업소득세	- 농작물에 대한 피해율이 30% 이상인 자	2002	
재 산 세	□피해를 입은 건축주가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신축, 증·개축하는 건축물로써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기분의 재산세	2년이내 대체취득시	
사업소 세 (재 산 할)	사업소용 건축물의 사업주로서 피해액이 법 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총소득금 액의 30% 이상인 자	2003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하춘영)
 - 태풍「루사」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 민들에게 법령의 범위내에서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재산세, 사업소 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 어 있으므로
 - 본 계획은 우리 지역 전체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방 세법상의 감면 요건에 부합되고 재해 피해 납세자의 자력 복구지원과 재해 피해에 대한 다소의 보전차원에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며, 향후 지방세 부과시 재해 피해자 및 피해 필지가 감면 대상 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기 재 생 략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2" 규정에 의거 태 풍「루사」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법령의 범위내에서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감면 요건에 부합되고 재해 피해 납세자의 자력복구지원과 재해 피해에 대한 다소의 보전차원에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ad 음